<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등록번호:20190721

정보공개서최초등록일:2019.07.22 정보공개서최종등록일:2025.04.18

홈페이지: whosteakorea.com

WHO'S TEA

정보공개서

주식회사 음식생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음식생각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 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 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주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10길 73, 6층 601호

가맹본부대표전화번호:02-981-9932 가맹본부대표팩스번호:070-4032-1530

가맹본부담당부서 및 전화번호:02-981-9932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 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 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 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정보마당'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법령 및 제도' '법령 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WHO'S TEA 외3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10길 73, 6층 601호					
주식회사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	번호	번호 대표팩스번호	
음식생각	2011.02.25	2011.02.25		김달회	02-981-9932		070-4032-1530	
	법인등록번호	1	10111-4544387	사업자등	록번호		210-81-6618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브랜드명	주 소			
		WHO'S TEA 외3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10길 73, 6층 601호			
대표이사	김달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달회	02-981-9932	070-4032-1530	

3.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WHO'S TEA	_
상 호	WHO'S TEA000점	-
당사BI	WHO'S TE A 鬍子茶	프리미엄 티를 사용하여 건강하고 맛있는 음료를 제공합니다. 밀크티, 버블티,생과 일차 등 다양한 메뉴를 후즈티에서 건강하 게 즐겨보세요,중국어로 후즈는 수염을 의 미합니다. 수염을 연상시키는 우유거품으 로 후즈티를 유쾌하게 즐겨보세요.

4.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2년	819,562	585,549	234,013	902,192	-16,112	-602
2023년	693,561	565,147	128,413	708,463	-90,065	-105,599
2024년	620,161	617,618	2,542	679,052	-112,799	-125,871

별첨1:2022년~2024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과 기타 매출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영업표지 별로 추정한 가맹사업관련 매출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이름		뭐 지이	사업경력				
관련여부	5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관련	김달회	회 대표이사	2008.12.28 - 2011.03.06	짚신매갈찜 대표	회사업무 총괄		
			2011.03.07~현재	(주) 음식생각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누(명)	직원수(명)	
시참	상근	비상근	역원구(8)	
2024년 12월 31일	1	0	1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 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짚신매운갈비찜]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본부	(주)음식생각	가맹사업	2009.08.14~현재	외식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번호:20110100012
				[참마음설렁탕]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본부	(주)음식생각	가맹사업	2024.10~현재	외식가맹사업
				정보공개서등록번호[20241042]
				[삐싱궈]라는 영업표지의
가맹본부	(주)음식생각	가맹사업	2019.06~현재	외식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번호:20190720
				[오공면샤브칼국수]라는 영업표지의
특수	(x) , , , , , ,	71041104	2021.10~	외식가맹사업
관계인	㈜공면	가맹사업	2023.03	정보공개서등록번호[20213221]
				2023년3월31일 자진취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일자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호자. WHO'S	가맹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 가를 수령할 권리	2018.07.30	4013824910000	리 완롱	2028.07.30 (2028.07.30)

- ▶ 당사는 상표출원에 관한 서류를 당사의 사무실에 비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방문하여 열 람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상표 출원자로부터 상표권 전용 사용권을 취득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관한 서류는 당사의 사무실에 비치하여 두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상기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귀하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해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정책에 따라 상기의 지적재산권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19.08.09

2.[WHO'S TEA]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식회사	WIIOLO TCA	김달회	2019.08.09.~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10길
음식생각	WHO'S TEA		2019.00.09.~연제	73, 6층 601호

3. [WHO'S TEA] 업종

영업표지	업종					
WHO'S TEA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WITU S TEA	음료	EI (TEA)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WHO'S TEA]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TICH	2022.12.31				2023.12.31	I	2024.12.31		
지역	전 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1	_	1	1	_	1	1	_
서울	_	_	_	_	_	_	_	_	_
부산	_	_	1	_	_	_	_	_	_
대구	_	_	-	_	_	_	-	_	_
인천	_	_	_	_	_	_	_	_	_
광주	-	_	_	_	_	_	-	_	_
대전	_	_	_	_	_	_	_	_	_
울산	_	_	_	_	_	_	_	_	_
세종	_	_	_	_	-	_	_	_	_
경기	1	1	_	1	1	_	1	1	_
강원	_	_	_	_	_	_	_	_	_
충북	_	_	1	_	_	_	-	_	_
충남	_	_	-	_	_	_	-	_	_
전북	_	_	_	_	_	_	_	_	_
전남	_	_	_	_	_	_	_	_	-
경북	_	_	_	_	_	_	-	_	_
경남	-	_	-	_	_	_	-	_	_
제주	-	_	-	_	_	_	_	_	_

5. 최근 3년간 [WHO'S TEA]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년	1	0	0	0	0	1
2023년	1	0	0	0	0	1
2024년	1	0	0	0	0	1

6. [WHO'S TEA]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WHO'S TEA]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78	사동/이르	사물/이를 얻었고지		OL 조	가맹점/직영점의 수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등록번호	업종	2022년	2023년	2024년
가맹본부	(주)음식생각	짚신매운 갈비찜	20110100012	한식	89/0	79/0	67/0
가맹본부	(주)음식생각	참마음설렁탕	20241042	한식	0/0	0/0	3/0
가맹본부	(주)음식생각	삐싱궈	20190720	중식	0/0	0/0	0/0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WHO'S TEA]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매출액 산정 근거: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 POS를 근거로 하여 기 재한 것입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 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 가 본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WHO'S TEA]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WHO'S TEA]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1곳	473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가 전년도 지출한 광고비와 판촉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내역은 당사의 총브랜드와 관련해 회사에서 지출한 총금액입니다. 따라서 해당 브랜드의 가맹사업을 위한 광고비 지출은 아래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구분	구분 수단		지출	비고		
十正	7.1 	내용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01.17
합계	(비공개)	2024년	[35,870]	[35,870]	[0]	
광고	-	_	(비공개)	(비공개)	0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예치하여 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미아동지점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7-5	02-983-1631

입금계좌번호:신한은행:140-009-241339 (주)음식생각 김달회

[예치방법은 인근의 신한은행을 방문하시어 예치신청서를 제출하고 가맹금을 입금하시거 나, 신한은행 홈페이지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가맹사업자 신규등록"후 생성된 가맹 금 예치 가상계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항 목	내 용	비고
신한은행 계좌 있는 사업자	① 가맹계약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신한은행방문 -> ③ 가맹금 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 예치증 서 교부받아 보관 (③번 절차는 인터넷뱅킹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간편하며, 입금된 내역은 전산에 등록되어 당사로 통보됩니다.)	
신한은행 계좌 없는 사업자	신한은행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신청후 위의 절차 실행	
계좌 개설시 필요서류	① 가맹금 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귀하는 또한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 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별첨2:가맹금예치신청서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 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 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 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WHO'S TEA]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대략 아래 표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3,200]				-
가맹비	11,000	계약체결과 동시	반환 안됨	상호사용,매뉴얼 경영지도 등의 금액	-
교육비	2,200	계약체결과 동시	반환안됨	개점전 교육비용으로 소요	*교육3인기준 1인추가시 55만원 부담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 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2,000	계약체결과 동시	본사납입대금의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계약약관 이행을 보증하는 금액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보증금은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합계	[15,200]
가맹비	11,000
교육비	2,200
계약이행보증금	2,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매장크기33㎡ 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65,879]	-			
인테리어	협력업체	22,000	2,200	계약시40% 공사완료시40% 오픈전 20%		내부3.3㎡ 당 2,200천원 외부30㎡ 이하 8,250천원 *금액변동요인: 평수증가 외부30㎡이상 지방경비
실외파사드 가구	협력업체	7,150	-			설치시
주방	협력업체	26,279	-	계약시40% 남품완료시40% 오픈전 20%	반환안됨 공급시 소멸	-
간판	협력업체	6,050	-	계약시40% 공사완료시40% 오픈전 20%		*금액변동요인: 평수증가 전면7m이상 지방경비
포스	협력업체	2,200	-	설치시		
DID	협력업체	2,200		설치시		

- ※ 위 금액은 점포개설시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며 점포구조 및 공사기간,물가변동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시행기준일 21년 4월)
 - ① 인테리어 및 간판 공사의 경우 서울,경기권 외에는 지방경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서울·경기(평택,안성제외)없음/안성·평택외(₩2,200,000)/충청·강원·전라·경상권 (₩3,300,000)/제주(별도정산)

②별도공사

닥트	홀 배기,급기공사
추가	석면공사,철거공사,닥트입상,전기증설작업,A/C작업,도시가스(LNG),창고공사,상하수도 인입공사,붙박이 쇼파쿠션,코아작업(닥트)
옵션	소방공사(유도등/소방설비),수신반 작업,비상구공사,스프링쿨러이설작업,방염작업,소방방염완비필허가작업,테라스,화장실
외부	폴딩도어,출입문교체공사,장비사용료,어닝공사

- * 건물여건에 따라 전기증설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③자체구입품목:식기세척기,냉난방기,전자제품 일부 등

- ※ 각종 인허가 사항은 점주 부담입니다.
- ※ 점포설비 (인테리어)는 본사가 정한 사양에 따라 본사가 지정하는 업체가 시공하기로 합니다.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시공할 경우 본사가 지정하는 업체가 감리를 할 수 있으며 감리에 따른 비용으로 3.3제곱미터 마다 일금 삼십삼만원(₩330,000)정<부가세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벌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벌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벌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5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5일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80%
계약 체결 후 5일 이후 가맹점오픈 이전	반환되지 않음

6)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점포를 선정한다. 이에 당사는 통행인의
또는	수·교통량 및 질·시장특성·통행인의 구매습성·주요한 근린시설·업종별 특성
당사 운영 팀	등 을의 점포선정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다. 가맹희망자는 당사에 점포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점포선 정
(02-981-9932)	에 대한 최종결정은 가맹희망자가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신규교육을 이수한자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건강검진을 필한 자	만18세 이상일 것

8)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9)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별도)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광고 분담금	본사	발생시 공지	발생시 공지	반환안됨	광고비용 으로소요	필요시 가맹점과 협의하여 결정
로열티	본사	매월 POS매출의 1%(부가세포함)	익월15일	반환안됨	상표사용료 경영지원의 대가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u>.</u>	-	_	-	_	가맹점사업자 자율
점포환경 개선비용	_	_	_	-	_	가맹점사업자 자율
지연이자	본사	미지급금의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반환안됨	_	-
보수교육	본사	실비 발생시 공지	발생시 공지	반환안됨	교육비용 으로 소요	_

※ 당사는 영업중 비용을 필요시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는 바 영업 중의 부담금의 총계를 산 정할 수 없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차액가맹금 지급

당사는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មាភ
재고관리	유효기간의준수여부,지정된상품의 사용여부,재고의 관리상태등	분기별1회	문의: 관리팀 (02-981-9932)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년 1회	문의: 관리팀 (02-981-9932)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 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 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 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 양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양도인)는 최초 가맹계약 시 가맹본부에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해서 계약의 종료일(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물품대금 포함) 및 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잔액을 상환하지만, 보증금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나머지 채무액을 당사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은 다음의 각 경우에 따라 부담이 발생합니다.

항목	금액(단위 천	비고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8,800	
가맹비	1년~ 2년미만시	6,600	부가세포함
	2년이상시	5,500	
교육비	2,200		부가세포함
계약이행보증금	2,000		부가세없음
홍보비	실비	_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귀하는 당사로부터 정산서를 교부받고 즉시 [WHO'S TEA] 임을 알 수 있는 상호·상표·서비스표·휘장·간판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이와 동시에 정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영업표지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 철거·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조치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액을 <u>1일당 일금 삼십만원(₩300,000)정<부가세 없음></u>의 비율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귀하가 [WHO'S TEA]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 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별첨4 참조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WHO'S TEA]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มฉ
(주)푸드월드	관계회사	블랙티 등 원부재료	2,191	2024년 매출액 기준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WHO'S TEA]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원부재료	㈜푸드월드	㈜푸드월드	경영지원수수료	해당없음	2024년

2) 당사가 [WHO'S TEA]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3. 상품,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귀하가 위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귀하가 위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지역과 상권에 따라 가격변동 가능)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이하 어조 버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티(TEA)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	WHO'S TEA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k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 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 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WHO'S TEA]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일반소매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WHO'S TEA]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일반소매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WHO'S TEA]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 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 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 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10조 2항 1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10조 2항 2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10조 2항 3가
4.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10조 2항 3나
5. WHO'S TEA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10조 2항 3다
6.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귀하에게 물품공급의 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 2). 당사와 약정한 물품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지체한 경우 3). 당사의 승인을 얻지 못한 물품 및 원자재를 별도 구매하고 판매하였을 경우 4). 당사가 정한 물품의 가격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5). 귀하가 신의칙에 입각하여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 귀하가 가맹계약기간 중에 당사와 동종의 영업을 한 경우 7). 귀하가 영업 및 영업활동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 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11 T 0=1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	11조 2항
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 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	
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	
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	
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조건의 변경사유 발생 시 상호 혐의 하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 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 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교육비등입금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운영팀 (02-981-9932)

※ 귀하가 운영하는 [WHO'S TEA]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당사에 2개월 전에 승인을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가맹비,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과 홍보비 (실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잔여기간에 한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모든 권리의무 당사에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완료	
대리행사	당사 승인시 가능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대리인 당사 운영 팀 면담 후 대리인지정 승인	-

※ 당사는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에 통지하도록 되어있으며, 상속 받은 상속인은 가맹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이 면제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의 존속 중에는 귀하가 [WHO'S TEA]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WHO'S TEA]와 동일업종	당사는 계약기간의 존속 중에는 경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WHO'S TEA]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영업시간의 제한은 없음	주5일 이상, 월25일 이상 영업	문의: 당사 운영팀 (02-981-9932)

- ※ 영업일수는 주 5일 이상, 월 25일 이상이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할 수 없습니다.
- ※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3일 이상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휴업하기 7일 전까지 담당팀에 신청하여 당사의 승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운영 실태확인	담당자 매장 방문→운영실태 확인→ 관 리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완료	분기1회	본사 관리팀	-
품질관리확인	담당자 매장 방문→품질관리 확인→ 관 리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완료	필요시	본사 관리팀	_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상품광고	50%	50%	행사기획 → 비용산정 →	
광고 전체 행사	가맹점모집광고	100%	0	행사내용및분담내역 통보 → 비용분담수락여부확인 → 행사진행 → 분담분	
	상품광고+ 가맹점모집광고	75%	25%	본사입금	
개별 행사		가맹점사업자	자체비용 소요		

- ※ 가맹점사업자부담률에 대해 전국단위 광고일 경우 전 가맹점사업자가 균등한 비율로 부담하고, 지역단위 광고일 경우 지역 가맹점사업자가 균등한 비율로 부담합니다. 각 가맹점사업자간 분담은 본사 및 본사지정업체가 공급하는 원재료 공급액의 비율로 정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 과반수가 찬성한 안건에 대하여는 참여하여야 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단. 영업표지 사용을 원할 경우 반드시 당사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과 비용 부담시 홍보물 제작을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귀하는 위약금으로 일금 이천만원 (₩20,000,000)<부가세없음>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 귀하가 물품대금의 연체, 계약종료 후의 의무 및 조치 위반, 영업비밀준수의무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거 손해액을 당사에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당사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귀하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가 기타 제의무를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당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귀하가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귀하는 위약금으로 일금 이천만원 (₩20,000,000)<부가세없음>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귀하가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 철거·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조치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액을 <u>1일당 일금 삼십만원(₩300,000)정<부가세 없음></u>의 비율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귀하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시간	소요비용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합계		[30]일 내외	1.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30	-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29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14	_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D-13	_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12	_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11	_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10-4	-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1	-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_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점포환경개선을 일체 요구하지 않으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 지원	가맹점 오픈시 인력 및 홍보지원 매장운영소모품 지원 (유니폼,앞치마,전단지,명함,세팅지외)	없음 (전 가맹점 해당)	오픈시	1,000,000 상당 금액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
가맹점 사업자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 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 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기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WHO'S TEA]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조기 안정화 자금지원	가맹점 오픈시 조기안정화를 위한 자금지원	가맹비 전액 납부 시	오픈일로부터 2달 간	100만원 상당의 마케팅/물류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WHO'S TEA]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구분	일차	주요내용	비고
AI ¬	1-3일차	주방매뉴얼 교육 식자재 발주요령 주방기물 사용교육 메뉴 레시피 및 실습 교육	필수교육
신규 교육	4-7일 차	고객응대 교육 직원관리 교육 포스활용 요령 서빙방법 교육 및 실습 주문 및 인사법 교육	필수교육

[※] 교육은 본사교육과 현장교육 1:1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본사의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WHO'S TEA]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비고
신규 교육	7일(56시간)	2,200	최초계약시이수
보수 교육	발생시 공지	발생시 공지	_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는 개업 시 교육에 불참할 경우 가맹점을 개업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개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IX.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연번	지역	직영점명	주소
_	-	-	_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도말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มอ
-	-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	-

끋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 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 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앞 쪽)

[별지 제5호서식]

기메그세히지기					처리기간	
		가맹금	가맹금예치신청서			즉시
	상호(가맹점)명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_	상호명(영업표지)					
가맹 본부	성명(대표자)					
L ,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글			원 정)	
신청인	의 계좌					
가맹본-	부의 계좌					
	맹사업거래의 공 ² 의7제2항에 따라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또는 인)
예?	치기관의 장	하-				
	지점장	<u> </u>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예치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 1.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본 가맹 금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의 예치일 부터 7일 이내에 이 증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 로서 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

가맹본부	브랜드명	
------	------	--

■ 가맹계약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제공확인	본인	은 가	맹계약	서를	제공받았습	-니다.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 정보공개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u>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u>로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제공확인	본인은	- 정년	보공개/	서를	제공받았습1	니다.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확인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정보를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

No.	상호 (가맹점명)	소 재지(주소)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가맹희망자는 수령일로부터 1개월 후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수령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에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맹본부	대표이사:	(인)
가맹희망자	성명:	(인)
	주소:	
	전화번호:	